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제774호 2024. 5. 28.(화)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51호 보전산지 해제(타용도 전용) .....	1
남해군 고시 제2024-5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상천) .....	5
남해군 고시 제2024-5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화천) .....	6
남해군 고시 제2024-5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봉천) .....	7
남해군 고시 제2024-55호 남상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771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23수용1396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11
남해군 공고 제2024-778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12
남해군 공고 제2024-780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20
남해군 공고 제2024-781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남해군 공고 제2024-782호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재공고 .....	29
남해군 공고 제2024-784호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	30
남해군 공고 제2024-785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갈화천) .....	37
남해군 공고 제2024-810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4-824호 양식업권 면허처분 및 양식업권 소멸사항 공고 .....	43

남해군 공고 제2024-825호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시행 허가에 관한 공고(창선  
고령자복지주택 정비공사) ..... 49

남해군 공고 제2024-826호 「제3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업무중복도) 의견수렴 공고 ..... 50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51호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 남 해 군 수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6	NI52-6-11-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9	NI52-6-11-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0	NI52-6-11-01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9	NI52-6-11-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5	NI52-6-4-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6	NI52-6-4-02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7	NI52-6-4-02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5	NI52-6-4-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6	NI52-6-4-036	준보전산지

# 남 해 군 공 보

(2) 제 774 호

2024년 5월 28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7	NI52-6-4-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46	NI52-6-4-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0	NI52-6-4-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6	NI52-6-4-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9	NI52-6-4-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0	NI52-6-4-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5	NI52-6-4-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6	NI52-6-4-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9	NI52-6-4-06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0	NI52-6-4-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8	NI52-6-4-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4	NI52-6-4-08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7	NI52-6-4-08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53	NI52-6-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71	NI52-6-5-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93	NI52-6-5-093	준보전산지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4	NI52-6-11-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5	NI52-6-11-00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6	NI52-6-11-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9	NI52-6-11-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0	NI52-6-11-01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03	NI52-6-12-00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11	NI52-6-12-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12	NI52-6-12-01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5	NI52-6-4-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6	NI52-6-4-03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7	NI52-6-4-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45	NI52-6-4-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0	NI52-6-4-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4	NI52-6-4-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56	NI52-6-4-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0	NI52-6-4-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6	NI52-6-4-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4	NI52-6-4-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5	NI52-6-4-07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6	NI52-6-4-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7	NI52-6-4-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8	NI52-6-4-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0	NI52-6-4-08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6	NI52-6-4-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8	NI52-6-4-08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9	NI52-6-4-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95	NI52-6-4-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97	NI52-6-4-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41	NI52-6-5-04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52	NI52-6-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53	NI52-6-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61	NI52-6-5-06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62	NI52-6-5-06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63	NI52-6-5-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71	NI52-6-5-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72	NI52-6-5-07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73	NI52-6-5-07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082	NI52-6-5-082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남해군 산림공원과(☎055-860-3663)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남해군 고시 제2024 - 52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 하 천 명 : 서상천(지방하천)
- 성 명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 점용목적 : 수위관측소 설치
-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93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영구점용 3.8㎡
- 점용기간 : 2024. 5. 16.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4 - 5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 성 명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 점용목적 : 수위관측소 설치
-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영구점용 22.5m<sup>2</sup>
- 점용기간 : 2024. 5. 16.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4 - 5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 성 명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 점용목적 : 수위관측소 설치
-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225-2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영구점용 3.8㎡
- 점용기간 : 2024. 5. 16.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4 - 55호

## 남상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남상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4.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상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988백만원(국비 1,395, 지방비 461, 자부담 132)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빈집철거 20호, 슬레이트 지붕철거 52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52호
- 안전 위생 확보 : 미끄럼 방지시설 830㎡, 노인보호구역 설정 제외, 옹벽 및 수로 설치 97m, CCTV설치 3개소, 재래식 화장실 정비 2개소
- 기초 생활 인프라 : 우수관로 신설 및 보완 287m, 도로 확·포장339㎡
- 주민공동시설 :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96.53㎡, 어르신 목욕탕 리모델링 39㎡ (태양광, 전기온수기 설치 제외), 공유마당조성 216㎡
- 경관시설 정비 : 노후담장 정비 157m
-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 주민위생교실, 원예교실, 리더 및 주민 교육 등
- 부대비용 : 설계비, 공감비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업비/0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987,567	1,395,000	461,000	131,567
주택정비	소 계		695,632	394,846	169,219	131,567
	· 빈집철거	20호	107,187	69,947	29,977	7,263
	· 슬레이트 지붕개량	52호	588,445	324,899	139,242	124,304
	· 집수리	-	0	0	0	0
안전·위생 확보	소 계		191,722	153,379	38,343	-
	· 미끄럼방지시설	830m <sup>2</sup>	26,703	21,363	5,340	-
	· 노인보호구역설정		0	0	0	-
	· 옹벽 및 수로설치	97m	133,650	106,920	26,730	-
	· CCTV 설치	3개소	27,299	21,840	5,459	-
	· 소방안전시설 조성		0	0	0	-
	· 재래식 화장실 정비	2개소	4,070	3,256	814	-
기초 생활 인프라	소 계		166,847	133,478	33,369	-
	· 우수관로 시설 및 보완	287m	82,270	65,816	16,454	-
	· 도로 확·포장	339m <sup>2</sup>	84,577	67,662	16,915	-
주민공동 시설	소 계		485,792	388,634	97,158	-
	·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1식	401,920	321,536	80,384	-
	· 어르신목욕탕 리모델링	1식	76,458	61,166	15,292	-
	· 공유마당 조성	1식	7,414	5,932	1,482	-
경관시설 정비	소 계		92,149	73,720	18,429	-
	· 노후담장 정비	157m	92,149	73,720	18,429	-
	· 경관시설 정비		0	0	0	-
휴먼케어	소 계		50,000	40,000	10,000	-
	· 주민위생교실	1식	32,000	25,600	6,400	-
	· 원예교실	1식	8,000	6,400	1,600	-
	· 준공백서	1식	10,000	8,000	2,000	-
주민역량 강화	소 계		18,000	14,400	3,600	-
	· 리더교육	1식	6,000	4,800	1,200	-
	· 주민교육	1식	4,000	3,200	800	-
	· 소방안전교육	1식	4,000	3,200	800	-
	· 마을 발전 워크숍	1식	4,000	3,200	800	-

<b>부대비용</b>	<b>소 계</b>		<b>287,425</b>	<b>196,543</b>	<b>90,882</b>	-
	· 기본계획비	1식	47,294	33,106	14,188	-
	· 세부설계비	1식	49,159	34,412	14,747	-
	· 석면조사비		0	0	0	-
	· 공사감리비	1식	125,997	88,198	37,799	-
	· 사업관리비	1식	25,168	17,618	7,550	-
	· 잡지출	1식	39,807	23,209	16,598	-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 055-860-3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771호

##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3.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9.

##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 공고 기간 : 2024. 5. 9. ~ 2024. 5. 23.(14일)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미등기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5-27	

##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남해군 건설교통과 (☎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4 - 778호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문화·관광시설 휴무일 변경 및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조항 신설을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장 및 이용시간 현행화(제5조)
- 나. 문화·관광시설 휴무일 변경 사항(월→화요일) 반영(제8조)
- 다. 이순신 영상관, 설리스카이워크 그네, 보물섬캠핑장, 작은영화관,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테이 캠핑장·물놀이장 등 이용료 현실화 반영(별표2~4)
- 라.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신설(별표4 제8호)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5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5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전화 055-860-8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설리 스카이워크 이용료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비고
스카이워크	2,000	1,000	
스카이워크 그네	7,000	5,000	

1) 소 인 : 7세 이하

2) 대 인 : 초등학교 이상

나. 운영시간 : 10:00~18:00 ※ 계절에 따라 유동적으로 야간 개장 운영

별표 3 제4호가목1)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캠핑장 이용료

가. 보물섬캠핑장

1)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이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펜션동	4인실 (34m <sup>2</sup> )	120,000	140,000	170,000	1일 기준
펜션동	2인실 (20m <sup>2</sup> )	65,000	80,000	120,000	
텐트사이트	1개소/1대당	40,000	40,000	50,000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또는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이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이용기준 정원에 따름.

※ 숙박시설 이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 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나. 힐링국민여가 캠핑장

1)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주 중	주 말 (공휴일)	주 중	주 말 (공휴일)	
텐트사이트	대형 6x8	35,000	40,000	40,000	45,000	1일 기준
텐트사이트	중형 6x6	30,000	35,000	35,000	4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 텐트 사이트 1명(중학생 이상)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 징수

별표 4 제3호다목 및 제3의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캠핑장 및 물놀이장(1박2일, 4인기준)

(단위 : 원)

구분	비 성수기		성수기(7~8월)		비 고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캠핑장	45,000	50,000	50,000	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li> <li>•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li> </ul>
물놀이장	20,000	20,000	20,000	20,000	

별표 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면적(㎡)	이용(대관)료	비고
1층	마주침공간	44.28㎡	무료	1. 이용기준(1시간/1회) • 주간: 09시~18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공동체부엌	101.52㎡	1시간당 10,000원	
2층	방음공간	38.28㎡	1시간당 3,000원	
	마루공간	41.76㎡	1시간당 3,000원	
다목적홀		77.7㎡	1시간당 7,000원	

- 1) 이용 가능 시간: 09:00~18:00(월~금 주간운영, 토·일, 공휴일 제외)
-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가. 입장(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 명칭		개 인			비 고
		일반	청소년 군	어린이	
파독전시관		1,000			
원예예술촌		6,000	3,000	1,500	
이순신 영상관		무료			
김만중문학관		무료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튜디오	전시실	5,000	4,000	2,000	
바래길 작은미술관		무료			
작은영화관	2D	7,000	6,000	6,000	
	3D	9,000	9,000	9,000	
	대관 (2시간기준)	1,484,000			산출기준: 영화관 212석 관람료 기준 (7,000원 ×2 12석= 1,484,000원)

나. 기준 연령

- 일 반 : 18세 이상
- 청소년 : 12세 이상 18세 미만
-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미만

다.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라.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b>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비 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협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신청 자격

- 문화예술 분야(문학, 영화, 웹툰, 사진, 미술)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
- 노도 문학의 섬 작가창작실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예술인
- 공통사항: 관내 지역 거주자 및 연간 2회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사용 불가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변조 등이 판명된 경우 선발 이후라도 취소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생 략)</p> <p>② <u>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 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u></p> <p>③ (생 략)</p>	<p>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매주 월요일, 단 노도 문학의 섬 시설 물은 매주 수요일(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 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u></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8조(휴무일)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매주 화요일. 다만, 휴무일이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 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4 - 780호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방법 추가(안제7조)

1)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2) 내용 : 제22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체계"

3) 조례안 주요내용

(기존)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개정)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나. 농지법 관련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제41조제4항)

1)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2) 내용 : 제84조제1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농지법 관련 시설에 대해 생산녹지지역(20%→60%) 건폐율 완화에 자연녹지지역(20%→40%) 규정 추가

3) 조례안 주요내용

(기존)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관련 조문 개정(안제46조제2항)

1)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2) 내용 :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조문 개정

3) 조례안 주요내용

(기존) 용적율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 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14,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전화 055-860-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로 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를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p>
<p>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1. ~ 3. (생략)</p> <p>⑤·⑥ (생략)</p>	<p>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생략)</p> <p>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p>

<p>③ · ④ (생 략)</p>	<p><u>다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남해군 공고 제2024 - 781호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 할 수 있게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조정하고, 할인율의 예외를 정함으로 명절 등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또는 적립금 환급(제9조제2항제3호)  
나. 개인당 구매 한도 일 30만원, 월 7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 조정(제9조제3항)  
다.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 할인율 및 보유한도 탄력적 적용(제9조제4항)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3,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경제과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또는 적립금 환급

-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남해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남해화폐 결제 후 적립금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당 구매 한도 일 30만원, 월 7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생략)</p> <p>②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하며, 할인판매의 경우 개인당 일 30만원,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4. 5.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9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또는 적립금 환급</p> <p>4. 5.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남해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남해화폐 결제 후 적립금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당 구매 한도 일 30만원, 월 70만원, 보유 한도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할인가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남해군 공고 제 2024 - 782호

##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재공고

###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 5. 13.(월) ~ 5. 17.(금) 18:00까지
2. 사업 대상 : 남해군 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
  - (우선지원)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 (지원제외)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기 지원 사업
 ※ 신청 사업장 미달 시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가능
3. 컨설팅 지원 내용
  - 안전보건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서류 작성 :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서류 작성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위험성 평가 포함)
  -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지원
4. 컨설팅 지원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및 공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한 컨설팅(1일 1개소 컨설팅, 사업체당 최대 5회 지원)
5. 지원 방법
  - 가. 신청 기간 : 2024. 5. 13.(월) ~ 5. 17.(금) 18:00까지
  - 나.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is17thje@korea.kr), 팩스(860-3727)로 제출
  - 다.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6. 사업장 선정 :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산재발생 위험도 높은 사업장 우선순위 기준
7. 선정 통보 : 5. 20.(월) ~ 5. 21.(화)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연락
  - ※ 문의사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860-3622~3623)

남해군 공고 제2024 - 784호

##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 제2회 남해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주 요 직 무 내 용
평생교육사 (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li> <li>평생교육사업 공모 신청·운영</li> <li>평생학습관 관리 등</li> </ul>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 · 주소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기준일 해당 자격증 소지한 자 및 경력 보유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가. 공공기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ul>

▶ **관련분야 실무경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평생교육분야 근무 경력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 평생교육분야 업무 경력

\* 전임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 명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5항)

## 4. 채용조건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 보수수준

구분	채용등급	연봉액 (천원)	근무시간	비고
평생 교육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6,357	월~금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li> <li>(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li> <li>(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li> <li>4대 보험 가입</li> <li>복지포인트 지급</li> </ul>

\*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41,551천원×35시간/40시간)

##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4.5.22.(수) 9:00 ~ ' 24.5.24.(금) 18:00	서류전형	-	2024. 5. 28.(예정)
	면접시험	2024. 6. 4.(예정)	2024. 6. 7.(예정)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국.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4. 5. 24.)까지 인정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동봉 \*정부수입인지 불가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라급) 5,000원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055-860-3113)으로 사전연락 바람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남해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구 분	내 용
	<p>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제출</p>
2. 이력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3.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2~3매 분량</li> </ul>
4. 직무수행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5매 이내 분량</li> </ul>
5. 서류전형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li> </ul>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기재</li> </ul>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기재</li> </ul>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li> <li>○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li> <li>○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li> <li>○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li> </ul> </li> <li>○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li> </ul>
9.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li> </ul>
10.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li> <li>-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li> </ul> </li> </ul>
11.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접수 시 원본 지참)</li> </ul>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분만 유효 (*최종 합격자에 한함)</li> </ul>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li> </ul>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행정팀 (☎ 055-860-3113)
  - 직무 관련 문의 : 행정과 교육협력팀 (☎ 055-860-3863)

남해군 공고 제2024 - 785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윤0	주소	창원시 진해구 월남로*****
소하천명		갈화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313-28번지 (1313-26 인근)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4년 5월 16일 ~ 2028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배수관(D200)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810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 인상 및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으로 인한 중량기준 수수료 추가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10%인상

나. 음식물류폐기물 중량기준에 따른 수수료 추가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안)

음식물류폐기물 중량기준에 따른 수수료(무게단위): 31원/kg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에 따른 수수료(부피단위)

(단위:원)

규격	용도	현행	변경
5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20	130
6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500	1,650
12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3,000	3,300
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900	990
6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700	2,970
1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400	5,940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9,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남해군청 환경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80,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전화 055-860-328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따른 중량기준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운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기준에 따른 수수료(무게단위) : 31원/kg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따른 수수료(부피단위)

(단위:원)

규 격	용 도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20	10	130
60 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550	100	1,650
120 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3,100	200	3,300
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930	60	990
6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790	180	2,970
1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580	360	5,940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부과·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수수료는 별표 1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p> <p>③ (생략)</p> <p>&lt;신설&gt;</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따른 종량기준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운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p>

남해군 공고 제2024-824호

##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남 해 군 수

##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638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24.05.29 2034.05.28 (10년)	삼동면 동부대로	오0섭	251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39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서대	50,000	2024.05.29 2034.05.28 (10년)	창선면 서부로	김0수 외3 (김0찬, 김0곤, 이0분)	25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40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서대	50,000	2024.05.29 2034.05.28 (10년)	남해읍 화전로 168	김0철	253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41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광천	50,000	2024.05.29 2034.05.28 (10년)	진주시 망경로 234-5	정0순 외1 (정0진)	254호 재개발

※ '23/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양식업의종류 (양식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51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광천	50,000	2014.05.29 2024.05.28	삼동면 동부대로	오O섭	
남해양식 제252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서대	50,000	2014.05.29 2024.05.28	창선면 서부로	김O수 외3 (김O찬, 김O곤, 이O분)	
남해양식 제253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서대	50,000	2014.05.29 2024.05.28	남해읍 화전로 168	김O철	
남해양식 제254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광천	50,000	2014.05.29 2024.05.28	진주시 망경로 234-5	정O순 외1 (정O진)	

## 남해양식 제 63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마) N 34-52-25.07, E 127-58-04.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리	
가	34-52-33.385	127-56-47.251	가-나	200	
나	34-52-33.385	127-56-55.125	나-다	250	
다	34-52-25.273	127-56-55.125	다-라	200	
라	34-52-25.273	127-56-47.251	라-가	250	



한양도목업계사무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63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경기점 :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 (마) N 34-52-42.59, E 127-58-25.9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3-31.226	127-57-08.409	가-나 200
나	34-53-31.226	127-57-16.285	나-다 250
다	34-53-23.115	127-57-16.285	다-라 200
라	34-53-23.115	127-57-08.409	라-가 250



한양도목설계사무  
HANYANG DO-MOK-SUL-GESAMU  
TEL. (055)863-1333



# 남해양식 제 64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 (마) N 34-52-42.59, E 127-58-25.9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3-09.517	127-57-07.123	가-나 250
나	34-53-07.722	127-57-16.723	나-다 200
다	34-53-01.394	127-57-14.981	다-라 250
라	34-53-03.188	127-57-05.381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64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 (마) N 34-52-25.07, E 127-58-04.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2-09.114	127-56-49.490	가-나	200
나	34-52-09.286	127-56-57.358	나-다	250
다	34-52-01.176	127-56-57.714	다-라	200
라	34-52-01.004	127-56-49.846	라-가	250



한양도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4 - 825호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 남해군수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17호선 (창선면 수산리)
공사의 종류	남해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정비공사(노견부 보도설치)		
사업시행자	남해군청(도시건축과)		
구 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461-3번지 (L=0.081km)		
공사시행장소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461-3번지 일원		
공사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4년 5월		
착수예정일	2024. 4.	준공예정일	2024. 5.
○ 공사의 목적 및 사유 - 창선면 고령자복지주택 신축건축물 주변 군도17호선 일원의 도로 노견부를 정비하여 입주자 및 군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남해군 공고 제2024 - 826호

**「제3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중복도) 의견수렴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제3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남 해 군 수**

1. 용역명 : 제3차 남해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기 간 : 2024. 5. 21. ~ 2024. 5. 28.
3.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제출
  - 팩 스 : 055-860-3727
  - 전자메일 : seonggyu@korea.kr
4. 의견처리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